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19일, 이인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9.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9.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이인선)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

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언론에게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은 이러한 협조요청의 적극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현행	개정안
	<u>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경쟁적으로 선정적·자극적인 내용이 반복되거나 피해자 관련 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피해자나 사건관계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과거 취재윤리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도외시한 보도가 계속되자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9월 「인권보도준칙」을 제정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자협회에서는 2012년 「성폭력 범죄

1) 원문은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참조.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마련하였음.

그 후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하고, 2018년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을 제정²⁾하였음. 2024년에는 기존에 성희롱·성폭력만 대상으로 하던 참고 수첩을 보완하여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폭력 유형을 추가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발간³⁾함.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사건보도의 권고기준 및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은 권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막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발간되고 있는 보도 참고 수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론보도와 관련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할

2) 원문은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참조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시 고려해 주세요! -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 발간”, 2024.1.18.

것을 언론에 협조요청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인복지법」 등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당시,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언론보도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방송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공정성 등을 침해할 수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하고 있는 심의·제재⁴⁾와 중복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도 권고기준 및 그 이행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대통령령⁵⁾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2조(공개금지) ①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3.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명칭), 주소, 얼굴, 기타 본인(단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
4.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복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6조(생명의 존중)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내용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39조의 2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여”란 문구를 명시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개정안에도 해당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⁶⁾

<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관련 입법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9조의21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 제2111046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111046호)」, 2021.11, 23~25쪽 참조.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⁷⁾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⁸⁾에 따른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노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 마련 과정에서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언론보도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방송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공정성 등을 침해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하고 있는 심의·제재와 중복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보도 권고기준 및 그 이행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수정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 결과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노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 마련 과정에서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언론보도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은 방송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및 공정성 등을 침해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하고 있는 심의·제재와 중복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보도 권고기준 및 그 이행 방안을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의 주무부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함.

수정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이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2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 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 은 여성폭력사건보 도로 인한 피해자 의 2차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방 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 론의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 다.	제18조의2(여성폭력사 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 ----- ----- -----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개정안과 같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u> <u>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